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전후 대비표

1. 개정 시행일: 2012.05.11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6 조 (계좌의 개설 및 해지) < 신 설 >	제 6 조 (계좌의 개설 및 해지) ⑤ 인터넷을 통한 예금 또는 적금의 해지 시에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은행은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나 휴대폰 인증번호를 이용자 확인방법으로 추가한다.	○ 예금 또는 적금 해지 시의 본인 확인방법 추가
제 10 조 (대출 서비스) < 신 설 >	제 10 조 (대출 서비스) ④ 인터넷과 전화(ARS)를 통한 대출 실행 시에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은행은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나 휴대폰 인증번호를 이용자 확인방법으로 추가한다.	○ 대출 실행 시의 본인확인방법 추가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: 적용